



제 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물관 및 미술관의 기부금품 모집 근거 마련 〉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656호)

2024.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한정애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7. 12.

다. 회 부 일 : 2024. 7.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는 있으나 모집할 수는 없음.

그런데 국민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를 기부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를 안내하는 행위도 기부금품의 모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물품은 모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부금품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이 그 운영을 위하여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예외로써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재산의 기부 등) ① ~ ⑥ (생략) <u><신설></u>	제8조(재산의 기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그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금전은 제외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u>
<u>⑦</u> (생략)	<u>⑧</u> (현행 제7항과 같음)

2. 검토의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제5조¹⁾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기부금품법」 제3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이 제외²⁾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것은 개별 법령에 근거 조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³⁾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국·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경우 자발적인 기부 또는 기증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모집 행위는 「기부금품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음.

그런데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에 대한 기부 요구가 있음에도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를 안내하는 행위도 기부금품의 모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적극적으로 기부를 안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이 기부금품의 접수뿐만 아니라 기부금품의 모집도 가능하도록 「기부금품법」의 적용 제외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국·공립 박물관에 대한 기부 및 기증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향유 증진 및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지는 긍정적인임.

다만,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기부금품 모집 허용은 개별 법률뿐만 아니라 「기부금품법」 제3조 적용제외 규정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재산의 기부 등) ①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시설의 설치,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확충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이하 “기부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등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기부행위가 사실상 공권력의 영향력에 의한 것일 수 있음을 경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제한하는 「기부금품법」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적용 제외를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기부가 필요한 경우 자발적인 기탁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문화체육관광부도 국·공립 박물관에 대한 기부문화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부금품법」과의 상충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9